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5. 11 선고 2016가단44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4. 20.

판결 선고 2016. 5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C 대 107.2㎡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, 2, 6, 5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.6㎡에 관하여 2005. 12. 30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김매경

별지